

 圖書館大會 主題發表

國內圖書의 購入問題와 公正去來에 관하여

任 昇 洋
慶熙大圖書館

序 言

一般的으로 圖書購入이란 圖書館 收書行爲에 있어서 가장 普遍的이고 主된 資料 蒐集方法의 하나로서 定해진 豫算內에서 資料의 選定을 거쳐 關係 會計法規에 의하여 所定の 注文契約節次를 밟게되는 일련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 다루려는 “國內圖書購入”이라는 主題는 本大會에서 採擇한 “장서개발과 수서문제”라는 共通主題中 分科主題의 하나로서 첫째 現在 各급 圖書館(公共, 學校, 大學, 特殊)에서 適用하는 관계법인 “예산회계법시행령”과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을 中心으로 國內圖書購入 節次上的 問題點을 분석검토하고, 둘째로 現행 國內圖書購入業務에 있어서 各급 圖書館마다 相異한 制度와 法規適用으로 注文과 納品, 즉 購買契約過程에서 惹起되는 割引率의 變數라든가 일부 악덕업자에 의한 덤핑판매등으로 인한 도서定價販賣에 대하여 不信任에 까지 이르게 된 現在에 즈음하여 사단법인 大韓出版文化協會(이하 出協이라 한다)와 사단법인 全國書籍商組合聯合會(이하 書聯이라 한다)간에 約定되어 實現단계에 이른 “獨點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에 근거한 “出版物 再販賣價格維持契約”에 대한 內容을 비교검토하여 各 圖書館마다의 圖書購入節次를 체계화하고 일원화하므로써 現在까지 圖書購入業務에 관한 한 상호 금기로 되어있는 制限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이다.

실제로 本人은 圖書館協會로 부터 本主題에 관한 原稿를 위촉받고나서 圖書館界 선배제현들의 玉稿를 찾아 보았으나 시간관계상 廣範圍하게 찾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關係에 관한 論文이 거의 없었으므로 몇몇 圖書館 收書 實務職員과 접촉하여 資料를 얻어보려 하였던 바 여러가지 現實의인 난제가 있어 現況分析에 까지 이르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일반적인 內容으로 다루고자 하오니 이 點 특히 양지하 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 國內圖書購入의 一般的 現況

豫算會計法施行令 第112條 第1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하면 “豫定價格이 200萬원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財産을 購入할 때”의 規定에 의한 金額을 超過하는 賣買에 관한 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一般競爭入札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國內圖書의 購入에는 대체적으로 두가지 方法에 의하고 있다.

첫째로 200萬원을 超過치 않을 경우에는 隨意契約에 의하여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 契約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圖書館은 이 規定에 따라 혹은, 이 規定內에서 다시 隨意契約額數를 제한하는 圖書館도 있지만 國內圖書를 購入하고 있음은 모두가 周知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購入節次를 간략하면, 資料¹⁾의 選定—複本調査—契約—購入稟議決濟—納品—檢收—支拂이라는 통상적인 節次가 일반적이다. 이 隨意契約에 依한 購入에서 現在 問題가 되는 것은 契約단계에서 割引率의 變數가 우리 圖書館 擔當사서들의 고질적인 問題가 되어 왔다. 이 點은 本人이 서울 소재 일부 大學圖書의 실태조사과정에서 表出된 바와 같이 圖書館마다 상이한 퍼센트를 適用하고 있었으며 同一 圖書館일지라도 購入時期的 差異와 納品業者에 따라 割引率이 서로 다르고 있음은 도서의 種類 즉, 敎材類, 敎養類, 參考類, 全集類의 다양성에도 기인하지만 各 出版社間에 있어서도 같은 種料의 圖書가 서로 割引率의 差異가 있음으로 해서 結果적으로는 割引率이 적은 良質의 圖書購入을 기피하는 現象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問題視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200萬원을 超過하는 圖書購入은 一般競爭入札에 의하여 購入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의 節次는 資料의 選定—複本調査—10日前入札公告—開札—契約—檢收—支拂의 過程으로서 위에서 言及한 隨意契約의 方法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이는 대량구매시에 보다 편리하고 擔當사서의 立場에서 보면 割引率 適用에 問題가 많이 覺감되는 반면 購入期間이 많이 소요되고 業務節次가 複雜하며 마진이 적은 圖書이거나 其他 私有로 納品不能件數가 많아지는 問題點이 있으며, 덤핑業者의 난입으로 정상적인 有通去來秩序에 混亂을 招來하는 問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우려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사소한 問題이긴하나 破本圖書의 적기교환이나 특히 希望圖書購入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圖書館에서는 迅速한 資料의 서비스에 또한 問題가 있음을 들 수 있다. 以外에 圖書館에서 購入節次上 適用하는 契約形式으로는 價格入札의

1) 豫算會計法은 從前에는 私立學校에 限하여 “私學機關 財務會計法”이란 特別法에 依하여 隨意契約時의 豫定價格은 50萬원을 超過할 수 없었으나 1982. 5. 28에 一般豫算會計法에 準하도록 改定됨.

경우가 있으나 이는 圖書의 種類別로 納品價格만을 決定하고 購入節次는 隨意契約의 方法과 유사한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內圖書購入에 있어서 問題點이라함은 購入節次上에 方法의 差異는 있으나 한가지 問題 즉, 良質의 圖書를 適價에 購入할 수 있는가 하는 課題는 圖書館 外的인 關係部署의 自發的인 改善없이는 解決方案이 거의 없다고 보다 妥當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2. 出版物 公正去來의 展望

「經濟憲法」이라고 까지 評價되고 있는 “率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略稱: 公正去來法)이 1980年 12月31일에 公布되어 3個月後인 同年 4月1日부터 發效된 同法 第7章 第20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條文을 本文대로 소개하면 :

- ① 商品을 生産 또는 販賣하는 事業者는 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이 定하는 著作物과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商品으로서 事業者가 당해 商品에 對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經濟企劃院長官으로 부터 미리 指定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하 1-3호는 생략

③ 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그리고 第20條 第2項의 大統領令이 定하는 著作物은 同法 施行令 第24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허용되는 著作物)에서 “...定하는 著作物이라 함은 著作權法 第2條의 著作物중...”이라 하여 그동안 出版界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公正去來의 問題들을 해결 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겠다.

우선 再販賣價格維持制度(Resale Price Maintenance System)란 용어를 해설붙여 본다면 商品을 生産하는 메이커(出版社)가 그 商品을 都賣商→小賣商→消費者에게 販賣할 때 다음 단계의 販賣價格을 메이커가 미리 定하여 그 價格대로만 販賣하도록 하는 定價制度를 意味한다.

再販賣價格維持行爲는 이 法이 原則적으로 禁止하고 있지만 第20條第2項에서 一般出版物을 包含한 著作物을 그 첫째로 明示하였고 一定한 條件을 갖춘 商品으로서 經濟企劃院長官의 指定을 받은 것은 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再販賣價格維持契約은 出版社와 都賣商 혹은 小賣商이 최종적으로 消費者에게 판매하는 定價(再販賣價格)를 꼭 지키어 割引販賣行爲 등을 하는 일이없도

특 法的 뒷받침에 따라 상호 약속을 하는 것으로서 이 契約의 要點은

- 1) 契約당사자 以外에는 出版物을 去來하지 않으며
- 2) 消費者에게 出版物을 定價대로만 팔며

3) 계약위반자는 違約制裁措置를 감수한다는 原則아래 지난 해에는 經濟企劃院公正去來委員會에 定價販賣를 위한 競爭制限 共同行爲登錄을 必하였고 當國의 지시에 따라 出協會員 1,000여社와 書聯會員 3,000여社와의 契約을 체결하여 금년 10월부터 法律의 뒷받침으로 定價販賣制度가 確立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團體間에 맺어진 契約을 조금 더 具體的으로 관찰하여 보면 出版物 再販賣價格을 維持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상호간에 警告, 損害賠償違約金請求, 期限附去來制限 또는 去來停止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公正去來委員會(委員長=經企院次官)에서는 不公正去來行爲로 規定되었을 경우는 벌금 5,000萬원 以下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價販賣以外에 끼워팔기도 규제대상이 되며 다만 入札에 따른 大量納品의 경우 割引率은 경가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寄贈用圖書는 例外로 취급하고 있다.

잠시 再販賣價格制度의 起源이라 할 수 있는 外國의 두드러진 事例를 살펴 보면 1895년에 英國, 런던의 藥師 Glyn Jones는 割引販賣除去의 可能性을 討議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販賣業者의 會議를 마련하고 다음 해 許可品 組合(Proprietary Articles Trade Association)을 創設한 것을 最初로 하여 現在 美國에서는 主로 의약품, 화장품, 圖書, 문방구, 주류, 연초, 사진재료 등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이웃 日本에서도 1953년에 체인메이커를 중심으로 小數業者가 參加한데 不過했으나 1960년대에 와서 大메이커들이 적극 참여로 소위 出版物의 再販3原則이라는 것이 있어 이의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同業者間的 協定價格制度는 자칫하면 業者에게는 暴利가 되고 消費者에게는 損害를 끼치는 것이되기 때문에 이를 防止하기 위한 적절한 制限措置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結 論

以上과 같이 國內圖書購入問題에 있어서 納品價格의 亂漲현상은 우리나라의 出版社가 덤핑販賣體를 6%나 利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重要한 현상은 出版社→都賣→小賣→消費者의 정상 販賣루트를 29.3%의 이용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問題點이 크다 하겠다.

이웃 日本의 경우는 圖書都賣會社가 2-3개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83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過多한 都賣書店이라는 것이 대부분 小賣店을 兼하고 있는 實情으로 이는 必然的으로 出版物流通秩序를 紊란시키는 結果를 가져오는 主要 要因이 되고 있다.

이렇듯 出版業界의 過剩競爭 投賣行爲로 인한 圖書購入業務上의 混亂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出版業界에서는 사이비 내지는 都小賣書店을 兼한 유사都賣店을 都賣專門書店으로 育成하고 더 나아가 出版物都賣專門의 大型會社를 設立하여 圖書流通의 健實化만이 아니라 出版製作의 健實化를 기하여 良書供給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公正去來의 수단이 되는 再販賣價格維持制度에 屢 出版業界가 參與하여 價格秩序를 形成하는 艱難이 圖書館 圖書購入 問題點을 해소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圖書館 장서개발과 수서문제점의 해결에 一益을 擔當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圖書館과 出版界間의 和合의 一面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韓國圖書館協會 出版案內

100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1街100-177 (社)韓國圖書館協會
☎ (22) 4864 · 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537530

韓國十進分類法 第3版	25,000원	古書分類目錄法(上)	3,500원
韓國目錄規則 第3版 豫定價	10,000원	韓國十進分類法解說	3,500원
公共圖書館의 施設	5,000원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3,500원
非圖書資料의 整理	3,500원	西洋圖書館史	3,500원
參考奉仕論	3,700원	公共圖書館運營	3,500원
情報科學과 컴퓨터	3,500원	發展途上國의 圖書館	3,500원
情報經濟學原論	4,500원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	3,500원
大學圖書館建築計劃	8,000원	中國의 典籍	3,500원
圖書館學概論(專門大)	3,900원	圖書館과 社會	3,500원
圖書館學概論(任鍾淳)	3,500원	大學圖書館	3,500원
韓國圖書館史研究	3,500원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5,000원
圖書館統計 및 評價	3,500원	韓國의 冊板紋樣	20,000원
公共圖書館	3,500원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3,500원
韓國目錄規則解說	3,500원	어린이 圖書館	3,800원